

결 정

2018 - 1013 신문윤리강령 위반

1. 東亞日報 발행인 임 채 청
2. 매일경제 발행인 장 대 환
3. 朝鮮日報 발행인 홍 준 호
4. 한국경제 발행인 김 기 응
5. 서울경제 발행인 이 중 환

주 문

東亞日報 2017년 12월 6일자 「헬스 동아」, 12월 14일자 「스타일 매거진 Q」, 12월 20일자 「헬스 동아」, 12월 22일자 「Bio 의약」 별지 섹션, 매일경제 12월 6일자 「해외주식형 펀드」, 12월 7일자 「CONSUMER journal」· 「충청이 편다」, 12월 8일자 「Money & riches」, 12월 11일자 「Car」, 12월 13일자 「반갑다 스키야」, 12월 14일자 「best of best」, 12월 15일자 「Money & riches」, 12월 20일자 「에듀 저널 2018 대입 정시」, 12월 22일자 「Money & riches」, 12월 26일자 「Car」, 12월 27일자 「내년 분양 아파트」· 「따뜻한 금융」 별지 섹션, 朝鮮日報 12월 8일자 「THE BOUTIQUE」, 12월 15일자 「THE BOUTIQUE」 별지 섹션, 한국경제 12월 14일자 「건강한 겨울나기」, 12월 21일자 「2017 고객감동 영상광고」 별지 섹션, 서울경제 12월 22일자 「2018 정시 대학가는 길」 별지 섹션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치한다.

이 유

위 5개사는 건강, 의약, 금융, 부동산, 재테크, 자동차, 대학, 패션 등을 주제로 별지 섹션을 제작하면서 특정 상품이나 기업 등을 장점 일변도로 홍보하는 기사를 게재했고, 일부 매체는 해당 광고도 실었다.

이러한 신문 제작 태도는 자사와 해당 기업 등의 영리를 위해 기사의 정확성·객관성·공정성 원칙을 저버린 것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 「언론의 자유·책임·독립」 ②(사회·경제 세력으로부터의 독립), 제3조 「보도준칙」 ⑦(보도자료의 검증)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8년 1월 10일

한 국 신 문 윤 리 위 원 회

위원장	김 용 담	김용담
위원	정 승 호	정승호
	장 명 국	장명국
	이 동 현	이동현
	장 인 철	장인철
	강 희	강희
	김 영 모	김영모
	박 현 갑	박현갑
	박 미 경	박미경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 「언론의 자유·책임·독립」 ②(사회·경제 세력으로부터의 독립) 언론인은 어떠한 단체, 종교, 종파 등 사회세력과 그리고 기업 등 어떠한 경제세력의 부당한 압력, 또는 금전적 유혹이나 청탁을 거부해야 한다.

제3조 「보도준칙」 ⑦(보도자료의 검증) 취재원이 제공하는 구두발표와 홍보성 보도자료는 사실의 검증을 통해 확인보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